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92 호 2019. 8. 29.(목)

##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44호[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45호[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7

##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62호[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26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93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3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94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34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956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6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li> <li>☞ 북구 홈페이지(<a href="http://www.bukgu.ulsan.kr">www.bukgu.ulsan.kr</a>)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li> </ul>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44호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 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  
의 순위와 총점은 공개해야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금고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  
고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20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다.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8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2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나.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다.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라. OCR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 (3점)	2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5점) 나. 구 와의 협력사업계획 ----- (2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7	

## [별표 2]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배점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 0점처리 가능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배점

###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 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다.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무인점포, 365코너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
-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처리 가능
  -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 나.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다.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라. OCR 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

- OCR 센터 운영실적 및 처리능력 평가 후 배점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 5. 9.)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평가 결과, 순위와 총점 등 공개에 관한 조문 신설(제10조)
  -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 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은 공개해야 한다.
- 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일부 조정(별표 1, 2)
  -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배점 조정 : 31점 → 27점(△ 4)
  -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 조정 : 18점 → 20점(증 2)
  -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배점 조정 : 20점 → 21점(증 1)
  - 금고업무의 관리능력 배점 조정 : 22점 → 25점(증 3)
  -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배점 조정 : 9점 → 7점(△ 2점)

울산광역시 복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45호

울산광역시 복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복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대출금리 이차차액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이전 또는 신설·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전기요금 지원금”이란 투자유치기업의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 사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관로개척 지원금”이란 투자유치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한 세미나 개최와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여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시설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공장시설 등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3.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 자문관의 자문료 및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투자유치기업 지정대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투자유치기업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제5조(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대출금리 이차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을 연 2%까지 2년에 한하여 기업당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업 대출금리가 이차보전 금리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단지 등의 토지 분양, 매입, 임대 비용

2. 산업단지 등에 공장시설 등을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소요된 건축, 설비 비용

②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기업과 협약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약 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에 신규로 1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에 한하여 기업당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요금 지원금)**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 사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 사용요금 지원은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이내에서 기업당 1천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기요금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사유발생일 해당연도 매 반기 말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판로개척 지원금)**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시장개척을 위한 세미나 개최와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여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시설비용 등의 일부를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기업당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유치기업은 3백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법」 제2조제3호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다른 기업부설연구소(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 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6.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③ 특별지원에 대한 지원규모,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보조금 등의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등)**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시설 등을 가동한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중 이전 및 휴업·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 대상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개인, 기업 및 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 여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자문료 등 지급기준(제3조제4항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구 비 서 류
자 문 료	• 1회당 지급기준 : 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협약체결서 사본</li> <li>• 자문 성과물</li> <li>• 청구서</li> </ul>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	• 청구서 및 증빙서류

## [별표 2]

##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제14조제3항 관련)

## 1. 지급기준

연간 투자금액	지 급 기 준
○ 6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투자금액의 1만분의 4
○ 12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 투자금액 부분의 1만분의 3 - 480만원 + (투자금액-120억원)×0.0003
○ 600억원 이상 1,200억원 미만	• 투자금액 부분의 1만분의 2 - 1,920만원 + (투자금액-600억원)×0.0002
○ 1,200억원 이상	• 투자금액 부분의 1만분의 1 - 3,120만원 + (투자금액-1,200억원)×0.0001

## 2. 지급액 한도 : 1억원 이내



## [별지 제2호서식]

## 협약용자금 이차보전 결정통보서

## 1. 기업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사업업종 (주생산품목)	( )			대출취급은행	

## 2. 지원내용

(단위 : 만원)

자금용도	용자 실행금액	이차보전 결정액	지원조건			비 고
			이차보전(%)	기 간	지급일	
계						
부지 분양(매입)·임대비						
건축비						
기계구입, 시설비						
기 타						

## 3. 분야별 사업량 내역

(단위 : 백만원)

지원시설명	규 격	수 량	총투자금액	비 고
합 계				
부지 분양(매입)·임대비				
건축비				
기계구입 및 시설비				
기 타				

위와 같이 협약용자금 이차보전금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협약용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전화	
			F A X	
공장(사업장)소재지				
용자금 대출 실행일				
대출실행금융기관		업종 (분류번호)	( )	
협약용자금 지원실행총액		만원	용자금리	%
용자금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용자금액	사업계획량	공정(율)	비고
합계				
부지 분양(매입)·임대비				
건축비				
기계구입 및 시설비				
기타				
이차보전금 신청금액	원			
<p>「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협약용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금융기관장 : (인)</p> <p style="text-align: right;">기업대표 : (인)</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용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확인서 1부				없음





[별지 제5호서식]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서

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	신고일		
	신고사업		
	투자금액	백만원	
신규 고용 인원		명	기존 사업장 인원
구 분		<input type="checkbox"/> 신 규 <input type="checkbox"/> 증 자	사업개시일
시설입지	소재지		
	면 적	총 부지면적 : m <sup>2</sup> , 시설면적 : m <sup>2</sup>	
	업 종	종업원수	
	착공일	준공(예정)일	
연간 전력 사용량		kw	
보조금 신청액		천원	
<p>「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p><b>【구비서류】</b></p> <p>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p> <p>2. 신규 고용을 증빙하는 자료 1부</p> <p>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p> <p>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p>수 수 료</p> <p>없 음</p>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4)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 [별지 제6호서식]

##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금 신청서

## ○ 신청자 내역

업 체 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계좌번호	( 은행)
E-mail		사 업 자 등록번호	

## ○ 판로개척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행사명	일 시	장 소	판로개척소요액			
			계	홍보물제작	임대료	시설비
합 계						

○ 보조금 신청금액 : 천원

※ 보조금지원은 한도금액 내의 소요액의 50% 지원

붙임 1. 사업비 입금확인서 1부

2. 정산 설계서 및 견적서(홍보영상제작 및 시설비) 1부

3. 현장사진 전·중·후 각 1부

4. 홍보물 1부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출 및 판로개척 사업비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별지 제7호서식]

## 보조금 정산서

○ 보조금의 종류 :

○ 보조사업 수행자

상호 또는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		사업개시 일 자	상시고용 (예정)인원

○ 보조사업 내용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		보조금액	

○ 정산내역(보조금 세부 집행내역)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1. 사업추진사진 (관련 장면 각 1매)

2. 사업내역,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투자유치 내 역	투자기업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투자자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사 업 장 소 재 지			
	업 종			
	입 주 유 형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증설	
	투 자 유 형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합작( %)	
	투 자 내 용	부지 :	건물 :	시설 :
	투 자 기 간			
	투 자 금 액	원		
투자유치 확인란	투자기업 또는 투자자		(서명 또는 인)	
<p>위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b>울산광역시 북구청장</b> 귀하</p>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수수료
	2.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고도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2. 주요내용

- 가. 시행규칙 제정 목적 및 관련용어 정의(제1조 ~ 제2조)
- 나. 투자유치자문관 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
- 다. 투자유치기업 지정대상 관련 규정(제4조)
- 라. 투자유치 재정지원(보조금) 종류(제5조 ~ 제8조)
- 마. 대규모 투자유치기업 등 특별지원 관련 규정(제9조)
- 바. 투자유치 재정지원(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제10조)
- 사. 사후관리, 보조금의 취소·반환·정산 관련 규정(제11조 ~ 제13조)
- 아. 포상금 지급 대상 관련 규정(제14조)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62호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 요건)

- ①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제7조제2항 본문 중 “기획홍보실장”을 “주민소통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면책심사신청 안내

울산광역시 북구 주관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본인
  - ※ 감사를 받는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는 기관의 장

###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요구 전

###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그 밖에 위에서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 면책심사 신청서

「울산광역시 복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심사대상자					
감 사 명		감 연 월 일	~	감사자	
감사지적사항					
면책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 타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의 책임자 의견	기관장(또는 감사부서 책임자) 확인 (인)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 면 책 심 사 조 서

감 사 기 관 명		감사연월일	~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징 계 양 정 ( 안 )			
비 위 내 용			
신 청 사 유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 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 타			
감사관 검토의견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 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 타			
종 합 의 건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9. 5. 14.) 및 행정안전부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2019. 3. 15.)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완화하고, 면책심사 신청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 면책기준 명확화 및 고의·중과실 요건 완화(제5조)

변 경 전	변 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성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필요성과 타당성 있을 것</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li> <li>-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li> </ul> </li> </ul>

나. 행정기구 명칭 변경(제7조제2항) : 기획홍보실장→주민소통실장

다. 면책심사 신청기한 삭제(제9조제3항)

라. 면책심사 관련 서식 변경 : 별표, 별지 제1호, 제2호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193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신기15길 20 외 5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8.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364-2 외 2(364-3, 363-1)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414	2019-08-29	이지역의지형에따라도 로명을부여하였다.	2009-08-20
2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272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93	2019-08-29	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 하는명칭이므로도로명 을부여하였다.	2009-08-20
3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중산지구 32B 13L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15길 20	2019-08-29	신기3길 인근 위치연계성 반영하여 일련번호 부여	2018-05-10
4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895-1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6길 4-7	2019-08-29	기존자연마을인약수마 에 위치하여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5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산70	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 214	2019-08-29	관문성으로가는길이라 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 다.	2004-08-09
6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65-7 외 1(158)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 66	2019-08-29	예전마을이름인찬샘미 ,한천(寒泉),냉정(冷井) 마을에위치하여도로명 을부여하였다.	2004-08-09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194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8.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시/군/구	주소	시/군/구	주소			
1	울산광역시 북구	재전1길 13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56	2019-08-29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길 44-8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128	2019-08-29	건축물 멸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6길 4-7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895-1	2019-08-29	건축물 멸실	
4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412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364-2	2019-08-29	건축물 멸실	
5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93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272	2019-08-29	건축물 멸실	
6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 72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49-2	2019-08-29	건축물 멸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956호

##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세무조사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참조 : 부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전부개정규칙안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복구청 부과과
- 2) 전화번호 : 052)241-7541, 팩스번호 : 052)241-7509

#### 2. 기타사항

- 가. 예고기간 : 2019.8.29.(목) ~ 9.18.(수)(20일간)
- 나.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붙임.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 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 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차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세무조사"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2개 이상 구·군과 연관된 자
2.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
3. 취득가액 30억원 이상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4. 지방세 1억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5.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지방세에 관한 규모·업종 및 신고, 납세 성실도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구청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5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

무조사 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으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 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일반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다른 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구청장은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에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구청장은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를 세원의 특정 항

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2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무조사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연간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연간 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1.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유공·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2.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이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3조(중복조사 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세무조사 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2.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세무조사 방법)** 세무조사는 대상자의 성실 납세의 정도,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직접세무조사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를 통한 방법으로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 여부 조사

2. 서면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한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 여부 조사 다만, 그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한 조사

3. 부분세무조사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에 대하여 제 2호의 방법으로 하는 조사

**제17조(세무조사 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세무조사 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자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19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세무조사의 기간)**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및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경

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 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3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및 중지)** ① 구청장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5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4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장부·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제26조(조사권 남용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4장 세무조사 사무관리

**제28조(세무조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세무조사 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1조(세무조사 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2조(세무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세무조사의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세무조사의 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조사책임자는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관한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대상자가 서면세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5조(세무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세무조사 결과 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7조(과세정보의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명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 ③ 구청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 제39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구청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b>조사공무원 행동수칙</b>
-------------------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역량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종료 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에 도착 즉시 조사 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관리현장을 내주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시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2)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8)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까지 조사내용 등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 5)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7-2)

##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법인의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 14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것입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의 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서식은 사업연도별 각각 작성 하시고, 각 서식 작성 시 울산광역시 북구 전체 분에 대하여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자료는       년 ~       년도 연도별 제출

- 한글 , 엑셀 파일서식 요청가능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전자민원→ 민원서식→ 부과과에서 다운 가능)

※ 작성 후 보낼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울산광역시 북구 ○○과

우편번호 (44248)

- 이메일 :

※ 문의 전화 : (052) 241 - ○○○○

210mm×297mm(백상지 80g/㎡)

(7-3)

###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 통 제 출

1. 지방세서면조사서 1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복구 등록사항 모두)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결산서내(연도별 작성):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상장법인은 제출 생략  
(주식변동 시 주식·출자 지분 양도명세서 또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포함)
  - ②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③ 공사(제조, 분양 등)원가명세서,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 ④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자산별 상세내역- 총괄표 아님)
  - 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명세서 (복구 외 사업장 안분 신고한 경우)
5. 보조장부내 계정별원장: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① 유형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시설물, 건설중인 자산 계정
  - ② 관관비, 원가계정 중 - 급여, 노무비 관련 계정
  - ③ 기타계정 -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세금과공과, 건설용지
6.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타 지역에서 일괄 신고한 경우 울산 근무 직원 급여자료(월별집계표)로 대체
7. 별첨서식
  - (서식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명세서(울산광역시 복구 소재 사업장)
  - (서식2) 주민세(재산분) 명세서(울산광역시 복구 소재 사업소)
  - (서식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울산광역시 복구 소재 사업소)

####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1. 정관 (비영리법인만 제출)
2.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조사기간 내 부동산 양도·양수 시)
3. 도급공사 명세서 내역 (건축 및 건설업일 경우)
4. 차량양수 및 양도계약서 사본  
(취득 후 바로 처분하여 계정에 없는 경우)
5. 종업원(일용직 포함) 50인 이상일 경우
  - ① 급여지급대장, 노무비지급대장
    - 공사 현장명 및 소재지 필히 기재 후 현장별로 제출
    - 용역과건 업체의 경우: 현장별 인력과건 현황표 별도 제출
  - ②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또는 소득자료명세서
    - 세무조정계산서 내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210mm×297mm(백상지 80g/㎡)

(7-4)

<서식1>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명세서(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사업장)

사업연도		사업장 주소		사업장명	
------	--	--------	--	------	--

구분 월별	종업원수	소 득 세 납 부 액							산출 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210mm×297mm(백상지 80g/㎡)

(7-5)

<서식2>

2 주민세(재산분) 명세서(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사업소)

사업연도	
------	--

사업소명	소재지	사업개시일	연면적 (㎡)(a)	구축물 (b)	저장시설 (c)	① 비과세면적(㎡)				과세면적 (㎡)e (a+b+c-d)	② 정당세액	납부세액	납부일자
						기숙사	구내식당	기타	소계 (d)				

※ 작성요령

- ① 비과세 면적 : 종업원의 보건위생이나 교양등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기숙사, 합숙소, 회사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체육관, 도서관, 휴게실, 구내목욕탕, 탈의실, 구내 이발소와 병기고, 탄약고,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 ② 정당세액 : 과세면적 × 250원 (중과대상 500원)
- ※ 중과대상 사업소: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

(7-6)

<서식3>

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사업소)

사업연도		사업소 주소												사업소명	
구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③소계														
② 법관세소득	연장														
	차량														
	⑤소계														
③ 종업원분주	관리														
	생산														
	수시														
	계														
급여지급일															
*최근 12개월간 월평균금액															
관세표준액 (총급여지급액) $C = (a + b)$															
④ 공제액 (d)															
⑤ 산출세액 $e = [C - d] \times (0.5/100)$															
납부세액															
납부일자															

※ 사업소가 많을 경우 사업소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210mm×297mm(백상지 80g/ m<sup>2</sup>)

(7-7)

※ 서식 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사업소) 작성요령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등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 2016년도 지급분부터 <최근 12개월간 월평균금액>란 작성

(2015년도까지 지급분은 작성 불필요)

① 근로소득: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써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

④ 공제액 : 공제액 = (신고한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 급여액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받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⑤ 산출세액: 2015년도분까지는 ③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16. 1. 1. 급여지급분부터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표준(㉔) - 공제액(㉕)]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별지 제2호서식]

### 압수 · 영치증

법인명(상 호):

소재지(사업장):

대표자(성 명): (생 년월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4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지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 · 영치)합니다.

압수 · 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압수 · 영치장소						
압수 · 영치사유						
압수 ·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참 여 자	소속		직		성명	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사유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 압수·영치 목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별지 제4호서식]

### 예치증

법인명(상 호):

소재지(사업장):

대표자(성 명): (생년월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지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정히 예치합니다.

예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예치장소						
예치사유						
참 여 자	소속		직		성명	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사유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 예치목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